

-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·운영 사무 -

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안 번호	57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. .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‘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·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~ 제12조
(민간위탁의 기준 및 대상기관의 선정기준)
-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~ 제6조
(위탁사무의 기준, 위탁사무의 대상, 위탁사무 선정기준 등)
- 「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
-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비부담 완화
- 전략적인 홍보·마케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운동선수 기량 향상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: 만촌롤러스케이트장 시설관리 및 운영
 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재지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(만촌동 57)

○ 준공연도 : 1992년

○ 규 모

- 부지면적 15,700㎡, 건축연면적 2,993㎡

○ 지원시설

- 경기장, 관중석

○ 운영현황

(단위 : 천원, 명, 일)

연 도	수탁기관	이용자수	이용 일수	예산 지원	수입 ①	지 출 ②	경영이익 ③=①-②
2018	대구광역시 롤러스포츠 연맹	49,902	348	78,105	186,769	129,230	57,539
2019		48,768	358	80,756	208,793	154,824	53,969
※ 수입 : 예산지원금, 이·사용료, 임대수입, 전년도이월금, 은행이자 등							
※ 지출 : 인건비, 일반운영비, 시설관리비 등			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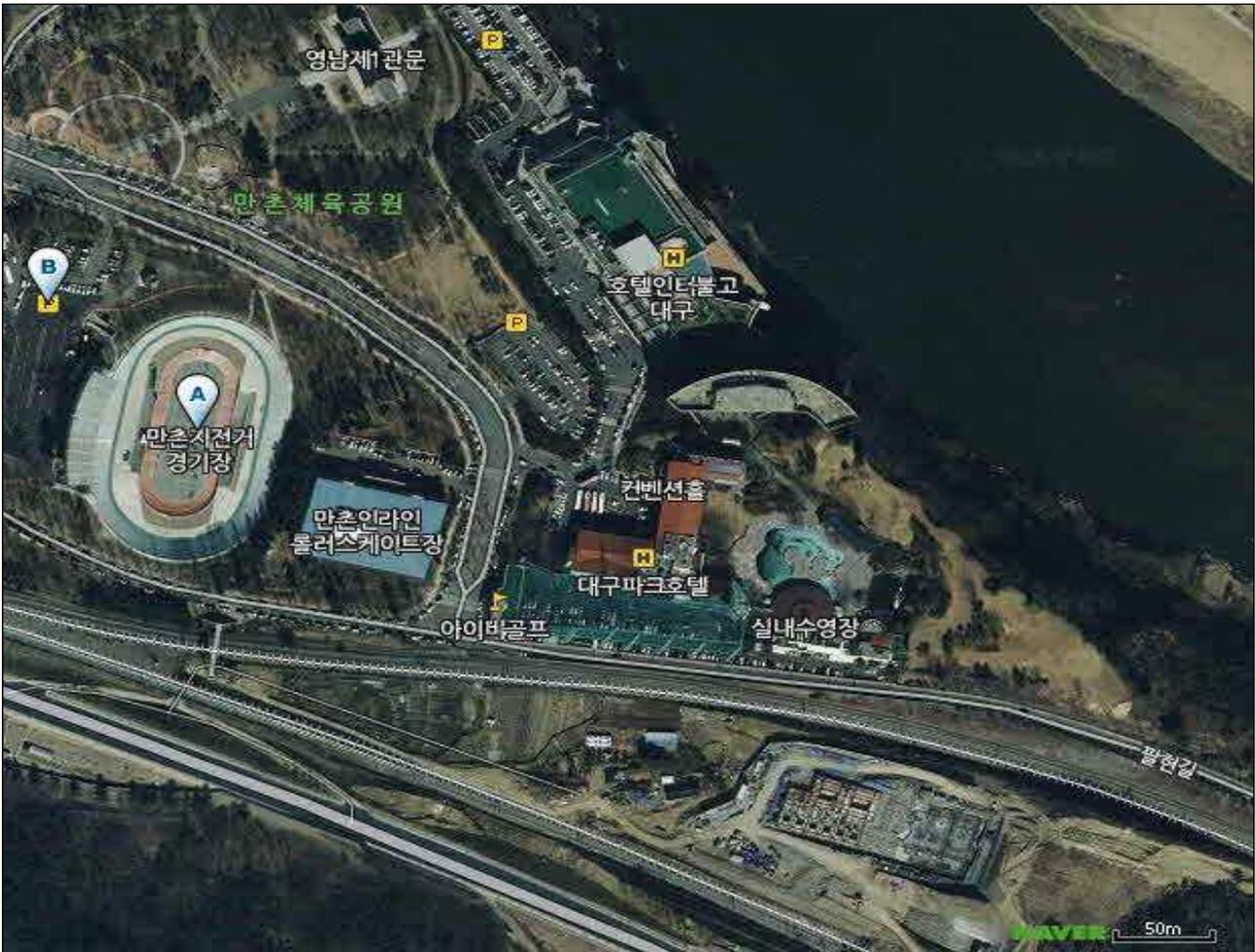
○ 2017년 성과평가내역(평가기관 : 대구경북연구원)

- 종합평점 71.77점(B등급)

※ 등급부여기준

등 급	S	A	B	C
평 점	100~90	89~80	79~70	70 미만

○ 위치도(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(만촌동 57))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"민간수탁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사무 기준)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 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·선수육성·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·이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,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적용한다.

제23조의2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을 별표 1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

나.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

○ 민간위탁추진계획

공공체 육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

■ 대상시설(4개소)

- (재위탁) 만촌롤러스케이트장,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 훈련장, 방천리야구장

■ 위탁기간(3년)

- 만촌롤러스케이트장, 방천리야구장
: 2021. 1. 1. ~ 2023. 12. 31.
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
: 2020. 10. 21. ~ 2023. 10. 20.

■ 위탁범위 :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
■ 위탁사무유형

- 만촌롤러스케이트장 : 예산지원형
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, 방천리야구장
: 수익창출형(독립채산형)

■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■ 추진일정

- 의회 동의 : '20. 9월 중
- 공개모집 공고 : '20. 9월 중
- 수탁기관 선정(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) : '20. 10월 중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

|| 목 차 ||

- I. 추진배경
- II. 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
- III. 추진방안
- IV. 주요 추진사항
- V. 향후 추진일정
- VI. 기대효과

붙임 1	민간위탁대상 공공체육시설 현황
붙임 2	만촌롤러스케이트장 외 3개소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(별첨)
붙임 3	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
붙임 4	대구광역시 사무 위탁신청서
붙임 5	확약서
붙임 6	위임장
붙임 7	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(안)
붙임 8	가산·별점 부여기준(안)
붙임 9	민간위탁적격자 심의의뢰서 제출서식(안)

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추진계획

‘20년 하반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 외 3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(기관)를 선정·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-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 제27조, 『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』 제12조 제2항 및 『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하고자 함
-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업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II 목적 및 필요성

-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성 확보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
- 전략적인 홍보·마케팅으로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
-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비부담 완화
-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

Ⅲ 추진방안

1 위탁 사무의 명칭

- 만촌롤리스케이트장 관리·운영 사무
- 비산강변축구장 관리·운영 사무
-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·운영 사무
- 방천리아구장 관리·운영 사무

2 위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
 -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~제15조
 - 민간위탁 및 대상기관 선정기준, 계약체결, 지휘·감독 등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~제6조
 -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, 위탁사무의 대상, 위탁사무의 선정기준 등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(수탁기관의 선정)
-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제23조(체육시설의 위탁관리)

3 위탁경과

● 만촌롤러스케이트장

수탁자	위탁기간	선정방식
대구광역시 롤러경기연맹	'15. 1. 1. ~ '17. 12. 31.(3년)	공개경쟁(수의계약)
대구광역시 롤러스포츠연맹	'18. 1. 1. ~ '20. 12. 31.(3년)	공개경쟁(수의계약)

● 비산강변축구장

수탁자	위탁기간	선정방식
대구광역시 체육회	'16. 4. 11. ~ '20. 10. 20. (4년 7개월)	지정위탁

● 비산소프트볼훈련장

수탁자	위탁기간	선정방식
대구광역시 체육회	'16. 4. 11. ~ '20. 10. 20. (4년 7개월)	지정위탁

● 방천리야구장

수탁자	위탁기간	선정방식
대구광역시 체육회	'16. 4. 11. ~ '18. 12. 31. (2년 9개월)	지정위탁
대구광역시 체육회	'19. 1. 1. ~ '20. 12. 31.(2년)	지정위탁

4

위탁개요

- 대상시설 : 만촌롤러스케이트장,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, 방천리야구장
- 위탁기간
 - 만촌롤러스케이트장, 방천리야구장 : '21. 1. 1. ~ '23. 12. 31.(3년)
 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 : '20. 10. 21. ~ '23. 10. 20.(3년)
 - ※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(위탁계약 체결) 2항에 근거
- 위탁범위 :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사무 유형
 - 만촌롤러스케이트장 : 예산지원형
 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, 방천리야구장 : 수익창출형(독립채산형)
- 위탁조건
 - 만촌롤러스테이트장, 방천리야구장 : 민간위탁금 일부 지원시설로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되,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 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 :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기관 책임 하에 관리
- 민간위탁 추진절차

민간위탁 추진절차

추진계획 수립 ➡ 의회 동의 ➡ 수탁기관 선정 ➡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
 ➡ 계약체결 및 홈페이지 공개 ➡ 인수·인계 ➡ 관리·운영

● 2020년 경영수지 분석(예상)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수입			지출	비고
	총계	자체 수입	시 지원금		
만촌롤러스케이트장	172,000	85,750	86,250	172,000	
비산강변축구장	0	0	0	0	이용료 무료
비산소프트볼훈련장	3,700	3,700	0	3,700	이용료 : 2시간 5만원
방천리야구장	60,000	60,000	0	60,000	이용료 : 2시간 5만원

※ 대구광역시 롤러스포츠연맹-2019-15(19.12.31.)호, 대구광역시 체육회 시설관리사업소-1331(19.12.31.)호에 근거

5 시의회 동의

- 근거 :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대상
 - 최초 시의회의 동의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(6년주기 동의절차 이행)
 - * 단, 당초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는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동의 절차 이행
- 내용 (별첨2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참고)
 - 위탁사무명
 -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민간위탁기간
- 수탁자 선정방식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-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(재 위탁 시 공개모집 대상시설은 제외)

6 수탁기관 선정

-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: '20. 9월 중
 - 공고방법 : 공보 및 시 홈페이지 (붙임3 공고문)
- 선정방법 :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['20. 3월중]
- 선정기준 : 붙임7 (수탁기관 선정 심사평가표(안))
 -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 -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
 -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 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사실
 -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, 관리·감독,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
 - 자치구별 균형분포
 -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 -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- 응모자격
 -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체육관련 법인·단체

7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

- 대상사무
 - 시의 재정적 부담 및 수익과 관련된 각종 협약체결
- 시 기
 - 위탁계약 체결전(모든 사업)
- 제출서류
 - 일상감사 요청서
 - 기타 참고자료[방침서 또는 계획서, 위탁계약서(안)] 등 보조자료

IV 주요 추진사항

1 사전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'20. 9월 중
- 장 소 :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황실(대구스타디움 내)
- 내 용 : 공공체육시설 설명 및 위탁신청 안내

2 신청서 접수

- 기 간 : '20. 9월 중
- 장 소 :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(관리과)
- 방 법 : 방문 제출 (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)

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
공 통	· 대구광역시 사무 위탁신청서 1부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계획서, 사업계획요약서 각 15부 ⇒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,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 포함 · 기타 증빙자료 각 15부 ☞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⇒ 선정기준에 부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※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5부(원본 1부, 부분 14부) 제출 ·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 : 대리인 방문접수 시 첨부 · 약약서 ⇒ 해당시설 재수탁 응모의 경우 성과평가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포함 ⇒ 수탁기관모집공모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수행한 경우 회계감사결과, 민간위탁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, 성과평가결과 제출 ⇒ 기타 증빙자료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☞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
법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(또는 사용인감계) 및 정관 각1부 ※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단 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회칙 각1부,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※ 단, 대구광역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산하단체는 가맹단체 확인서로 대체가능 ※ 사업자등록증, 회칙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
3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

3-1 위원구성(6~9인)

- 위촉직(6~9) : 관련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(위촉)
 - ※ 관련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1/4을 초과할 수 없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
 - ※ 간사 :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

3-2 심사평가

- 심사방법 : 사업계획서 등 심사확인
 - ※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적격자 심의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

☑ 채 점

- 「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(안)」(붙임 7)의 항목별 채점
- 「가산·별점 부여기준(안)」(붙임 8)의 각 항목별 채점하여 가감산

☑ 방 법

- 응모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(안)의 점수와 가산·별점 부여기준(안)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은 수탁자(기관) 선정
- 응모기관이 1개인 경우 채점하지 않고, 『적격』 여부로 심사 의결함
- 심사기준 및 배점(총점 100점)

3-3 심사운영

● 회의운영
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● 의결방법

구 분	의 결 방 법
1개 기관이 응모한 경우	· 『적격』으로 의결된 응모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한 경우	· <u>심사집계결과 응모기관별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응모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</u> ※ 단, 최고 득점한 응모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▶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재평가 후 최고 득점한 응모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 ▶ 재평가 결과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 투표로 최다 득표한 응모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
V 향후 추진일정

- 의회 동의 : '20. 9월 중
- 수탁기관 선정
 - ① 공개모집 공고(공보 및 시 홈페이지) : '20. 9월 중
 - ※ 2개 미만의 업체 신청 시 재공고 실시예정
 - ② 사전설명회 개최 : '20. 9월 중
 - ③ 위탁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접수 : '20. 9월 중
 - ④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: '20. 10월 중
 - 위원구성(6~9인)
 - ▶ 위촉직(6~9) : 관계공무원(전체위원수의 1/4이내) 및 관련전문가
-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
 - ① 일상감사 의뢰 : '20. 10월 중
 - ② 계약서 법무담당관실 심사 의뢰 : '20. 10월 중
-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인계·인수 : '20. 10월 중
 - ① 공개모집에 따른 관리·운영 사무의 위·수탁협약 체결 후 공증
 - ②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市 공보, 홈페이지 게재
- 위·수탁 개시
 - 만촌롤러스케이트장, 방천리야구장 : '21. 1. 1.
 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 : '20. 10. 21.

VI 기대효과

-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자 선정으로 위탁사업의 투명성 확보
- 민간의 경영기법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
-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비부담 완화
- 전문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기여
- 이용객 확보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으로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

붙임 1

민간위탁대상 공공체육시설 현황

시설명	위치	규모	시설현황
만촌롤리스크라이트장	대구 수성구 팔현길 241(만촌동 57)	- 부지 : 15,700m ² - 연면적 : 2,993m ²	- 경기장, 관중석
비산강변축구장	대구 서구 비산동 1986	- 부지 : 8,700m ²	- 축구장 1면
비산소프트볼 훈련장	대구 서구 비산동 1986	- 부지 : 7,044m ²	- 소프트볼장 1면
방천리아구장	대구 북구 산격동 1477-1	- 부지 : 53,600m ²	- 야구장 6면

붙임 2

만촌롤러스케이트장 외 3개소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(별첨)

붙임 3

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- 호

공공체육시설 수탁기관 모집공고

『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제13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0. . .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

1. 위탁시설 개요

○ 예산지원형

시설명	위치	규모	시설현황
만촌롤러스케이트장	대구 수성구 팔현길 241(만촌동 57)	- 부지 : 15,700㎡ - 연면적 : 2,993㎡	- 경기장, 관중석

○ 수익창출형(독립채산형)

시설명	위치	규모	시설현황
비산강변축구장	대구 서구 비산동 1986	- 부지 : 8,700㎡	- 축구장 1면
비산소프트볼 훈련장	대구 서구 비산동 1986	- 부지 : 7,044㎡	- 소프트볼장 1면
방천리야구장	대구 북구 산격동 1477-1	- 부지 : 53,600㎡	- 야구장 6면

2. 위탁사무 범위 :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

3. 위탁조건 (※ 세부사항은 위·수탁 협약에 따라 처리)

- 만촌롤러스케이팅장, 방천리야구장 : 민간위탁금 일부 지원시설로서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되,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 : 일체의 수입과 지출을 수탁기관 책임 하에 관리

4. 위탁기간

- 만촌롤러스케이팅장, 방천리야구장 : 2021. 1. 1. ~ 2023. 12. 31.까지(3년간)
- 비산강변축구장, 비산소프트볼훈련장 : 2020. 10. 21. ~ 2023. 10. 20.까지(3년간)

5. 응모자격

-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체육관련 법인·단체

6. 사전 설명회

- 일 시 : 2020. 9월 중
- 장 소 :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상황실(대구스타디움 내)

7. 신청서 접수 (방문제출만 가능)

- 기간 : 2020. 9월 중
- 장소 :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
-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 (필 수)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구광역시 사무 위탁신청서 1부 · 사업계획서, 사업계획요약서 각 15부 ⇒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,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 포함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증빙자료 각 15부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⇒ 선정기준에 부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※ 제출서류 중 사업계획서와 기타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5부(원본 1부, 부분 14부) 제출 •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 : 대리인 방문접수 시 첨부 • 협약서 ⇒ 해당시설 재수탁 응모의 경우 성과평가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포함 ⇒ 수탁기관모집공모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 수행한 경우 회계감사결과, 민간위탁처리결과에 대한 감사결과, 성과평가결과 제출 ⇒ 기타 증빙자료는 선정기준에 부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법 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(또는 사용인감계) 및 정관 각1부 ※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 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회칙 각 1부,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※ 단, 대구광역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산하단체는 가맹단체 확인서로 대체가능 ※ 사업자등록증, 회칙 사본 제출 시에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

8. 수탁기관 선정 및 발표

○ 선정방법 :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·의결

○ 선정기준

- 1)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
- 2)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
- 3)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(부정당업자 제재)사실
나.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감사, 관리·감독, 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

- 4) 자치구별 균형분포
- 5)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
- 6)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

- 심사방법 : 서류심사 및 수탁사업 제안설명, 심사위원과의 질의·응답
 - 제안설명은 사업책임자(법인·단체대표 또는 법인·단체대표가 위임한 자)가 설명(단, 불참 시 위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)
 - ※ 위임받은 자가 제안설명 시 기관대표의 위임장 제시
- 선정기관 발표 : 개별통지(소정 기일 내 협약체결, 불응 시 차 순위자 선정)

9. 기타사항

- 위탁사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, 『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』 등 관련법규 및 기타 수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탁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오류 및 누락상태로 접수 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탁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- 본 공고에 제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전 설명회 시 별도 배부하는 설명서 등에 따라야 합니다.
- 사전 설명회 참가는 의무사항은 아니나,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설명과 관계자료 배부가 예정되어 있으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불참자에게도 사전 설명회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(☎ 803-83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5

확 약 서

- 법인(단체·개인)명 :
- 법인(사업자·주민)등록번호 :
- 소재지 :
- 대표자 :

상기 법인(단체·개인)은 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수탁자 공모 신청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1.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.
2.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.
3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청구요구를 하지 않겠으며,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 및 대구광역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0. . .

법인(단체·개인)명 : (직인)

대 표 자 : (인)

※ 법인은 법인인감(또는 사용인감)날인,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, 개인은 인감날인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

붙임 6

위 임 장

본인 (위임하는 자)		대리인 (위임받는 자)	
법인(대표자) · 단체명 · 개인		성 명	
법인(사업자 · 주민)등록번호		주민등록 번호	
주 소		주 소	
연 락 처		연 락 처	
위 임 내 용			
대구광역시 공공체육시설 사무 위탁신청 촉탁			

2020. . .

법인(단체 · 개인)명 : (직인)

대 표 자 : (인)

※ 법인은 법인인감(또는 사용인감)날인,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, 개인은 인감날인

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귀하

붙임 7

수탁기관 선정 심사 평가표(안)

구분	평가항목(예시)	배점한도	비 고
총계		100	
적 정 성 심 사	정량적 평가	20	주관부서 담당자 평가
	정성적 평가	80	민간위탁심의 위원회 평가

- 1) 각 평가항목은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항목의 삭제, 신설 및 배점 조정 가능
- 2) 각 항목별 배점은 사무 특성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조정
- 3)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응 및 서비스 향상 전략 항목은 최소 10점을 배점하여 평가 하되, 이용자가 일반 시민이 아닐 경우 삭제 가능
- 4) 평가 후 총점이 70점 이상 기관 중 최고점을 획득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

붙임 8

가산·별점 부여기준(안)

분 야	항 목	배 점	
		배점한도	평점
언론보도	1.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우수사례 보도 2.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불법·부당·불만사항 보도	2	0.5 -0.5
표창	1.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국가, 지자체, 언론사, 민간단체 명의 표창	2	0.5
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감사 등	1. 위탁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 - 1~3건 - 4~6건 - 7건 이상	-2	-0.5 -1.2 -2
	2. 위탁기관의 지도·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- 1건 - 2~3건 - 4건 이상 또는 시정명령 등 미이행	-3	-1 -2 -3
	3. 만족도 조사 결과 - 60점 미만 - 60점 이상 ~ 70점 미만 - 80점 이상 ~ 90점 미만 - 90점 이상		-2 -1 1 2
	4. 5인 이상 집단민원 및 동일 사항에 대한 3회 이상 민원 접수	-3	건당 -1
	5.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체불, 「근로기준법」 미준수 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 또는 지도 등을 받은 경우	-3	건당 -1
시 평가담당관실 평가	1.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등급	-2 ~ 2	가등급: 2 나등급: 1 다등급: 0 라등급: -1 마등급: -2

- 1) 적용기준 : 수탁자 모집 **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** 발생한 사항
- 2) 언론보도 : 건수 × 평점(동일 사항 언론보도 사항은 1건으로 처리)
 - ※ 불법·부당 등 수탁기관에 불리한 언론보도일 경우 소명자료 제출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외 가능
 - ※ 시에서 실시한 다른 민간위탁사무 내지 평가 대상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에 한함
- 3) 표창 : 건수 × 평점(평가 대상 기관과 법인 등을 같이 하거나 유관기관인 경우 제외)
 - ※ 평가 대상 기관과 법인 등을 같이 하거나, 대표자가 동일하는 등 관련 있는 기관 명의 표창은 제외
 - ※ 개별 관계자에 대한 표창은 제외(대표자에 대한 표창은 가능)
- 4) 감사 등 : 시(구·군 제외)에서 실시하는 다른 민간위탁사무 대상, 평가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사무 수행 실적을 제출케 하고,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 등 조회 후 평가
 - ※ 감사 시 지적사항 중 경미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,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조금 환수, 관계자 징계 관계 법령 위반 보안을 위해 일정 기일이 필요하는 등 중대한 사항만 해당
- 5) 만족도 조사 : 만족도 조사 실시 시 그 결과 반영(2회 이상 실시 시 평균한 값 기준)

붙임 9

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제출서식(안)

위탁사무명					
실·국명 (주관부서)			부서장	(직급, 성명, 전화번호)	
			팀 장	(직급, 성명, 전화번호)	
			담당자	(직급, 성명, 전화번호)	
시설개요 또는 사무개요	시 설 명				
	소 재 지				
	시설규모				
	시설용도				
	준공일자			개관일자	
	이용대상			수용인원	
	보유장비 현 황				
민간위탁적격 자심의위원회 과거 심의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의일자 : 00년 0월 제0차 위원회 ○ 심의결과 : 적정, 부적정, 조건부 적정 등 ○ 조건이행 : 조건내용, 이행결과 기재 등 ※ 조건이행 관련 보완방침서 또는 검토서 첨부 				
사업목적 및 위탁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목적 - ○ 위탁사무 내용 -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- ※ 위탁사무가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시 각 사업별 세부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함께 적시 ○ 전년도 대비 위탁내용이 추가·삭제·변경되었을 경우, 추가·삭제·변경된 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 - 				
민간위탁 예정기간	○ 3년				

<p>수탁자 선정방법, 수탁자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초 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 방법 기재 ○ 수의협약인 경우는 수의협약 예정인 업체명, 재계약인 경우는 현수탁자명을 기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업체의 성격 및 분야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사업비용 및 수입내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○ 재위탁의 경우 지난 2년간 위탁금 및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의 위탁금을 예상 기재 ○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 사업비용 <단위 : 천원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연도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업비용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예산과목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세부 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8년</td> <td></td> <td>민간위탁금</td> <td>인건비 000, 사업비 000, 관리비 000 등</td> </tr> <tr> <td>2019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20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21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22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 최근 3년간 수입내역 <단위 : 천원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연도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수입금</th> <th style="width: 75%;">세부 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17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18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19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연도별	사업비용	예산과목	세부 내역	2018년		민간위탁금	인건비 000, 사업비 000, 관리비 000 등	2019년				2020년				2021년				2022년				연도별	수입금	세부 내역	2017년			2018년			2019년		
연도별	사업비용	예산과목	세부 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8년		민간위탁금	인건비 000, 사업비 000, 관리비 000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9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0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1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22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연도별	수입금	세부 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7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8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9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민간위탁 추진경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위탁 추진과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0년0월 △법령에 의거 및 자체 방침 등 - ○ 민간위탁 추진현황(※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생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초 위탁시부터 현재까지 수탁기간별 수탁자, 수탁자 선정방법 등 - ○ 향후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p>사전 타당성 검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○ 법령 및 조례에서 시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- ○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(조례포함) 및 방침서 기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조문 기재-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하는 경우 제6조 각호 중 해당사항 기재 ○ 공익성(공공성)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시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-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- 시의 상시·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○ 직영과의 비교 분석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·예산절감 효과- 서비스 향상 효과- 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※ 사업 중복성 검토 ○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(통합가능성 여부) 검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○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탁자 세부현황

1. 명 칭(대표) :

2. 소재지(전화번호) :

※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: 직책 · 성명 · 전화번호(사무실, 핸드폰) 등

3. 설립목적 :

4. 설립일자 및 연혁

년 월 일	내 용

5. 주요사업(간략히 기재)

-
-
-

6. 대표자 및 임원 현황

직 위	성 명	주요 경력

7. 실제 위탁사업 수행 직원 : 총 명, 정규직 명, 비정규직 명

직 위	성 명	자격증 소지현황	담당업무	근무기간	정규직/ 비정규직

※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수행 예정 직원 현황만 기재(정규직 비정규직 구분)

8. 운영 조직도 (1,2 동시 기재 가능)

1. 수탁자 조직도
2.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

9. 재무현황

가. 재산현황 : 총 천원(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금액으로 표시)

구 분	유 형	내 용	평가액(천원)

※ ‘구분’ : 기본재산, 수익용재산, 기타재산으로 구분
 ‘유형’ : 동산(토지, 건물), 부동산(현금, 유가증권, 채권 등)으로 구분

나. 부채현황 : 총 천원

종 목	내 용	금 액(천원)

다. 수입 현황 : 총 천원

종 목	내 용	연 수입액(천원)

10. 세입·세출 내역서(위탁기간 중 연도별) (※ 재위탁시 작성)

※ 해당 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·세출서만 작성